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 토 보 고

〈교제폭력범죄 처벌 절차 특례 및 피해자 보호절차 마련 등〉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45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4
1. 교제폭력 개념 및 현황	4
가. 교제폭력 개념	4
나. 교제폭력 현황	7
2. 총괄적 검토	8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8
나. 제정안의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8
다. 법 제정의 필요성	12
라. 외국의 입법례	15
3. 주요 조문별 검토	18
가. 제명	18
나. 총칙(안 제1장)	19

1) 정의(안 제2조)	19
2) 다른 법률관의 관계(안 제3조)	27
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리절차(안 제2장)	29
1) 신고의무 등(안 제4조 등)	29
2)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안 제5조 등)	31
3) 항고·재항고(안 제15조 등)	43
4)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안 제20조)	45
5)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안 제21조)	46
6)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안 제22조 등)	50
7)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23조)	52
라. 피해자보호명령제도(안 제3장)	54
1) 피해자보호명령 등(안 제26조 등)	54
마.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안 제4장)	58
1) 배상명령 등(안 제30조 등)	58
바. 벌칙(안 제5장)	64
1) 교제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안 제37조)	64
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안 제38조)	69
3)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안 제39조)	7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27인
2. 제 안 일 : 2024. 7. 5.
3. 회 부 일 : 2024. 7. 8.

II. 제안이유

최근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 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제폭력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등의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의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7조).

IV. 검토의견

1. 교제폭력 개념 및 현황

가. 교제폭력 개념

□ 교제폭력은 법률상 용어가 아닌 애인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 성적 · 정서적 · 경제적 폭력, 통제, 그리고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개념¹⁾으로서 현재까지 이에 대한 법적 정의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교제폭력이 사적영역으로 간주되어 공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왔기 때문이다.

○ 이러한 교제폭력은 현행법상 범죄유형에 따라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등을 적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교제폭력은 행위 태양에 있어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범죄와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서로 다양하고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특정될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음.

1) 신보라,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9. p.4

○ 이러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교제폭력은 다른 일반범죄에 비하여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교제폭력은 관계성 범죄라는 점에서 가정폭력·스토킹행위와 유사하게 다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나 각각의 구별되는 특징이 있음.

○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보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 피해자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가정폭력의 행위객체인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되는바, 교제폭력은 법률상 혼인 또는 사실혼 등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가정구성원 관계가 아닌, “애정”을 기반으로 한 연인 간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음.

-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보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 처벌과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범죄가 구성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 피해자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교제폭력은 “관계”에 초점을 둔 개념인 반면 스토킹행위는 “행위방식”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서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가 교제폭력의 한 유형이 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교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구별되는 점이 있음.

나. 교제폭력 현황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에 대한 신고건수는 2020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2022년에는 2018년(46,689건) 대비 65.9%가 증가한 70,790건을 기록하였음.

○ 교제폭력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2023년 9월 기준 전체 검거인원(10,466명) 중 폭행·상해가 68.2%(7,13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체포·감금·협박이 9.0%(948명), 성폭력이 3.0%(322명)를 차지하고 있음. 이 중 전체 검거인원의 97.64%인 10,219명이 불구속되었고 2.36%에 불과한 247명만이 구속되었음.

[교제폭력 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신고 건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계	폭행· 상해	체포·감 금·협박	성폭력	기타	계	구속	불구속
2018	46,689	10,203	7,464	1,089	99	1,554	10,203	354	9,849
2019	50,581	9,823	7,003	1,067	84	1,669	9,823	290	9,533
2020	49,225	8,951	6,416	898	51	1,586	8,951	212	8,739
2021	57,305	10,538	7,507	1,000	145	1,886	10,538	216	10,322
2022	70,790	12,828	9,068	1,154	274	2,332	12,828	214	12,614
2022.9	52,771	9,859	7,013	890	205	1,751	9,859	148	9,711
2023.9	58,571	10,466	7,138	948	322	2,058	10,466	247	10,219

* 자료: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4」, 2023. 12. p.133. * 출처: 경찰청(2023)

2.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 최근 강남역 교제살인 사건,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등 현재 또는 과거 연인관계에서의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교제폭력은 더이상 연인 간 발생하는 단순한 애정문제가 아닌 중대범죄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과 같이 조기에 공권력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 체계상 교제폭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바, 제정안은 별도의 교제폭력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교제관계”를 법률상 용어로 정립하고 “관계의 친밀성”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교제폭력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처벌 절차 및 피해자보호조치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제정안의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 제정안은 총 5장, 40조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은 총칙으로서,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교제관계”, “교제폭력”,

“교제폭력범죄”, “교제폭력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정의하고 있음.

- 제2장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교제폭력과 관련하여 접근금지 등의 강제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의무, 변호사 선임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장은 피해자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규정함.
- 제4장은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로서, 교제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배상명령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5장은 벌칙에 관한 사항으로,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배제하고,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불이행죄,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위반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조문체계]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교제폭력범죄의 처리절차)	제4조(신고의무 등) 제5조(교제폭력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6조(긴급응급조치)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8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제9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10조(잠정조치의 청구) 제11조(심리의 비공개) 제12조(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3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제14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제15조(항고) 제16조(항고장의 제출) 제17조(항고의 재판) 제18조(재항고) 제19조(집행의 부정지) 제20조(교제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21조(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22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24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25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구 분	내 용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26조(피해자보호명령의 관할) 제27조(피해자보호명령 등) 제28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29조(임시보호명령)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제30조(배상신청) 제31조(배상명령) 제32조(배상명령의 선고) 제33조(신청의 각하) 제34조(불복) 제35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 (벌칙)	제37조(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38조(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 제39조(벌칙) 제40조(과태료)

다. 법 제정의 필요성²⁾

- 교제폭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범죄보다 지속적 또는 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특정될 수 밖에 없어 경미한 수준에서 시작하였더라도 방치할 경우 보복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큼.
- 이에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선제적 개입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이 포섭되지 않으면 접근금지 등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현행법상 접근금지 등 가해자에 대한 강제적 조치를 통한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서,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교제폭력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스토킹행위와 결부되어 나타나야 함.

2) 교제폭력은 폭력·협박 등의 형태로 나타나 기존 현행법으로도 처벌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처벌 공백에 따른 새로운 범죄의 창설적 측면보다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 측면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함.

-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법 적용 대상인 가정구성원을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만 한정하고 있는바, 교제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교제폭력이 스토킹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면 「스토킹처벌법」도 적용할 수 없음.
- 특히 교제폭력의 범죄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인데, 이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조치는 할 수 없게 됨.
- 다만, 경찰청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련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서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강제적 조치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만 가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보호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사건 초기단계부터 교제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제폭력의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법을 제정할지 여부는 입법의 효과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단순 애정문제로 치부되던 교제폭력을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현행법상 모든 유형의 교제폭력에 대처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고 “교제폭력범죄 피해자 중심”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교제폭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미 현행법에 규정된 폭력에 대응하는 내용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및 관련 법규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³⁾이 있음.

- 현실적으로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상 사실혼 관계와 교제 관계를 즉각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제정안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의 사항은 현행 「스토킹처벌법」과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⁴⁾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 대응 과정에서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제정안 중 어느 법률상의 보호조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참고로 교제폭력 관련 입법과 관련하여,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제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률안 2건⁵⁾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3) 원혜옥, 「데이트폭력처벌법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형식에 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제14권 제3호, 2022.12.

4) 개정안은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유형과 절차 등이 대부분 「스토킹처벌법」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보호명령,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심신장애 감경규정 적용배제 등이 추가된 형태임.

- 법원행정처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광범위성 등의 문제 및 스토킹 관련 법률과의 중복성 등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경우 법체계 적합성 및 실무상 혼란이 우려되는바,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라. 외국의 입법례

- 미국은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하여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해당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동법은 “데이트폭력”과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데이트폭력”을 “피해자와 낭만적인 사회적 관계나 사적으로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사람이 행사한 폭력”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관계 존재 여부는 ① 관계의 지속기간 ② 관계의 유형 ③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간의 상호 접촉 빈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가해자와 낭만적인 사회적 관계나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제2201584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제2201685호)

사적으로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사람”으로 정의하고 관계 존재 여부는 데이트폭력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은 「가정폭력법」(2021)에서 가정폭력 범주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 구체적으로 제1조(가정폭력의 정의)는 ① 당사자가 각각 16세 이상이고 서로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②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경우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 제2조에서 “개인적 관계”를 ① 두 사람이 혼인관계이거나 이를 맺은 바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두 사람이 혼인을 하기로 합의하였던 경우(해당 합의의 종료 여부 무관) ③ 두 사람이 친밀한 개인적 관계이거나 이를 맺은 바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16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폭력적 행동” 범위에 신체적·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통제적이거나 강압적인 행동, 심리적·감정적 또는 그 밖의 학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다만, 영국의 가정폭력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가정의 회복’ 혹은

‘가정의 유지’라는 목적과 보호사건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일본은 배우자 폭력에 대한 신고, 상담,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배우자폭력방지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원래 배우자에 의한 폭력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아니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적용할 수 없었으나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생활의 본거지를 같이 하는 교제관계”에 있는 상대방부터 폭력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교제폭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생활의 본거지를 같이 하지 않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제명

- 제정안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대한 특례,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에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병행하여 명시하고 있음.

제 정 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제명은 법률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의 취지 및 목적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 현행 특정범죄에 관한 특별법의 법 제명을 살펴보면, 법 내용을 처벌과 그 절차상 특례 등 형사사법 영역을 중심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처벌”을, 특정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대책 등 국가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를 사용하고 있음.

<현행 형사특별법 등 법 제명 비교>

구 분	형사사법 영역 중심	국가정책 영역 중심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u>처벌</u>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u>피해자보호</u>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스토킹범죄의 <u>처벌</u>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u>피해자보호</u> 등에 관한 법률

구 분	형사사법 영역 중심	국가정책 영역 중심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u>처벌</u>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u>피해자보호</u>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u>처벌</u> 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u>피해자보호</u> 등에 관한 법률

- 특히 “피해자보호”를 법 제명에 포함하고 있는 입법례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국가 등의 책무,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 실시, 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등 피해자보호에 대한 국가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총칙(안 제1장)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교제관계”, “교제폭력”, “교제폭력범죄”, “교제폭력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제 관계”란 결혼, 계속적인 반려(伴侶) 관계 또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2명의 이성(異性) 간의 관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양 당사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또는 성적(性的)인 유대 관계가 있을 것

제 정 안

나. 당사자 중 어느 일방도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다. 당사자 간의 관계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할만한 공동생활의 실체에 이르지 아니할 것

라. 당사자 중 일방 이상이 상호 간의 관계를 교제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

마. 관계의 기간, 성격 등에 비추어 당사자 상호 간의 관계가 사회통념상 교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

2. “교제폭력”이란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교제폭력범죄”란 교제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제1항·제3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2조 및 제264조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제1항, 제273조제1항 및 제275조제1항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78조, 제279조, 제280조 및 제281조제1항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제283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8조, 제289조,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 및 제294조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5조 및 제305조의2(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및

제 정 안

- 제305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및 제311조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 및 제324조의5(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 및 제369조제1항의 죄
- 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 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죄
-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교제폭력행위자”란 교제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교제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안 제2조는 “교제관계”를 정의하면서 현재 또는 과거 교제관계 상대방을 대상으로 행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교제폭력”으로, 교제폭력으로서 「형법」상 폭행·협박죄 등의 죄를 “교제폭력범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교제폭력범죄”는 새롭게 규율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 자체는 현행법상 「형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나 “교제관계” 해당 여부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피해자보호조치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반의사불벌 제외 등의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차이가 있는바, 적용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교제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제1호의 “교제관계” 정의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그 공통 요건으로서 교제의 목적(“결혼, 계속적인 반려 관계 또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유지”) 및 당사자의 특성(“2명의 이성 간”)을 규정하고,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보다 구체적인 요건⁶⁾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동성 간 교제, 3자 이상의 교제, 당사자 중 일방 이상이 다른 법적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교제⁷⁾, 당사자 간 사실혼 관계 등은 법률상 교제관계에 해당하지 않게 됨.
- 다만, 법 체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안 제2조제1호는 본문에 규정된 공통 요건과 가목부터 마목까지 규정된 5가지 요건이 결합하여 “교제관계”가 되는 구조인데, 결합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만

6) 가. 양 당사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또는 성적(性的)인 유대 관계가 있을 것
나. 당사자 중 어느 일방도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다. 당사자 간의 관계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할만한 공동생활의 실체에 이르지 아니할 것
라. 당사자 중 일방 이상이 상호 간의 관계를 교제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
마. 관계의 기간, 성격 등에 비추어 당사자 상호 간의 관계가 사회통념상 교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

7) 즉,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이 다른 법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도 교제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규정하고 있어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어도 교제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교제관계의 요건으로서 “반려 또는 친밀한 관계”(안 제2조제1호), “교제관계라고 인식”(안 제2조제1호라목), “사회통념상 교제 관계에 있다고 인정(안 제2조제1호마목)” 등 주관적 또는 규범적 평가가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바,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셋째, 현행법 체계상 당사자 간 혼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바, 해당 관계가 교제관계에 포함되지 않음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1호에 교제 목적의 하나로서 “결혼 형성·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결혼 유지”는 이미 혼인관계에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 안 제2조제1호나목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도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교제관계 상대방과도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넷째, 안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의 명시적인 의사 표시 없이 일방의 교제관계 인식만으로도 교제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같은 호 마목에서는 사회통념상 교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관계의 기간, 성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교제관계를 판단하는데 있어 두 가지 요건이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예컨대 일방만이 교제관계로 인식하고 다른 일방은 교제관계를 부정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교제관계 인정의 기준이 되는 “관계 기간” 등을 특정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다음으로 “교제폭력범죄” 정의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3호하목은 “교제폭력으로서 「스토킹처벌법」 제18조의 죄”를 교제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안 제3조에 따라 제정안이 우선 적용됨으로써 「스토킹처벌법」에 없는 피해자보호 명령 제도,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을 적용받게 되는 효과가 있음.

○ 다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범죄에 이르기 전인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도 가능한 조치인데, 제정안에 따르면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로 나아가는 경우 적용 법률이 「스토킹처벌법」에서 제정안으로 변경되는바,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던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법원행정처는 객관적인 행위 태양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제정안에 따른 교제관계·교제폭력은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안 제2조제1호마목에서 교제관계를 “당사자 상호 간의 관계가 사회통념상 교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상 “교제관계”와 “교제관계가 아닌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⁸⁾.

○ 또한 서로 교제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제를 시작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교제폭력범죄 사건의 심리가 교제관계 인정 여부에 매몰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우려가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경찰청은 안 제2조제1호에 대하여, “교제”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을 뜻하므로 2인으로 명시할 이유가 없고, “교제관계”를 이성 간의 관계로 국한하고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⁹⁾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8) 가령 서로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친밀한 관계에 이른 경우 사회통념상 교제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호 교제관계에 있다는 의사는 없는 경우, 성관계만을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는 경우, 한쪽 상대방이 여러명과 교제하는 경우, 인터넷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여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경우, 특정 게임에서 캐릭터로 만나 캐릭터간 교제관계를 맺은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이 존재할 수 있음.

9) 결혼한 사람과의 교제,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의 교제, 동성 간 교제 등

- 안 제2조제2호에 대하여, “교제폭력”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로 정의할 경우 그 의도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¹⁰⁾가 있고,
- 안 제2조제3호에 대하여, 교제폭력범죄 중 손괴죄는 규정되어 있으나 중손괴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368조(중손괴)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 안 제2조제4호에 대하여, “교제폭력행위자”를 “교제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는 “교제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있어 교제폭력범죄가 아닌 교제폭력의 경우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0) 유사입법례인 “가정폭력” 정의 규정에서도 “해를 끼칠 의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3조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교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하여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형사절차 특례 및 피해자보호조치 등을 적용하기 위한 것인바,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특별법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제정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임.

- 다만,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11)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법을 우선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의 적용대상인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도 해당하고 있는바, “과거 배우자였던 사람과의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제정안 중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가정폭력처벌법」을 우선적용할 경우 가정보호사건, 상담조건부

1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기소유예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 제정안을 우선적용할 경우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가능하고 피해자보호조치 등을 불이행한 경우 보다 강한 제재로 처벌할 수 있음¹²⁾.

- 참고로 「가정폭력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법원행정처는 특정사건¹³⁾이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교제폭력범죄 중 어느 범죄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실무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범죄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보호조치가 결정되기보다는 필요한 조치에 따라 범죄명이 결정되고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 나아가 적용법률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잠정조치 신청 등이 기각 될 수 있고 기소 이후 법률적용에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2)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반면, 제정안은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13) 가령 동거관계에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가 모호할 수 있는데, 제정안은 사실혼 관계를 “교제관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안 제2조제1호다목) 사실관계 해석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가정폭력처벌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수사·기소하게 됨

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리절차(안 제2장)

1) 신고의무 등(안 제4조, 제39조제3항제2호 및 제40조)

- 안 제4조는 누구든지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9 구급대원, 의료인 등 특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제 정 안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3.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누설한 사람

제 정 안
제40조(과태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안 제4조는 누구든지 교제폭력범죄를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료인 등 범죄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교제폭력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소극적인 신고¹⁴⁾로 범죄에 대한 신속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안 제40조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제2항¹⁵⁾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면서

- 14)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16. 9.12 ~ 2016. 9. 21.)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1.6%가 최근 교제관계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95.2%가 교제폭력 피해를 입은 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음(손문숙·조재연,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데이트폭력 피해 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자료집, 2016. 10. p.10, p.27.).
- 15) 제4조(신고의무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조치로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교제폭력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교제 폭력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제폭력의 제지, 향후 교제폭력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히 엄중 처벌 경고 2. 교제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를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긴급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5.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제6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교제폭력을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 정 안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교제폭력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6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는 후 피해자가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제 정 안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 ⑥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
 - 가. 제6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와 동일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나. 제6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와 동일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한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제10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교제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리의 비공개) ①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하여 증인신문(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원은 그 허가 여부와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 정 안

제12조(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교제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교제폭력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5. 관련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교제폭력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교제폭력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5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정 안

1. 교제폭력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교제폭력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교제폭력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5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⑧ 제1항제6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교제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⑨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교제폭력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피해자가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 결정의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에 따른다.

제14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교제폭력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 정 안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교제폭력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교제폭력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3. 제12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실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은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정안에 따른 피해자보호조치는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교제폭력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교제폭력행위자 ·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②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이 지속적 · 반복적으로 행할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하되, 판사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③ 검사는 교제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결정할 수 있음.

- 이에 따르면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를 “교제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를,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구조임.

□ 다만, 법체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안 제5조제1호는 사법경찰관에게 교제폭력 현장에 나가 “향후 교제폭력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히 엄중 처벌 경고”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제1항은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교제폭력은 교제폭력범죄인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교제폭력범죄는 단 1회의 행위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반면 교제폭력

범죄가 아닌 교제폭력의 경우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음.

- 특히 실제 교제폭력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폭행·협박의 경우 1회의 행위만으로도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등이 성립되는바, “교제폭력의 지속적·반복적 발생 우려”를 전제로 응급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스토킹처벌법」은 스톱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스톱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스톱범죄”로 단계를 구분하여 각각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가정폭력처벌법」은 폭행 등 1회의 행위만으로도 가정폭력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범죄”를 전제로 모든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피해자보호조치 제도 비교〉

구 분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제정안
〈응급조치〉			
요 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진행 중인 교제폭력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조치권자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조치유형	1. 폭력행위자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	1. 스톱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1. 교제폭력의 제지, 향후 교제폭력을 지속적 또는

구 분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제정안
	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 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로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 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반복적으로 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히 엄중 처벌 경고 2. 교제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를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5. 피해자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조치기간	별도 규정 없음		
불이행시 제재	별도 규정 없음		
<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 · 긴급응급조치(스토킹·제정안)>			
요 건	·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조치권자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
조치내용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구 분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제정안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후 조치	·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사법경찰관) → 48시간 이내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검사)	·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신청(사법경찰관) → 48시간 이내 판사에게 사후승인 청구(검사) →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 승인(판사)	·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신청(사법경찰관) → 48시간 이내 판사에게 사후승인 청구(검사) → 교제폭력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 승인(판사)
불청구/기각시	즉시 긴급임시조치 취소	즉시 긴급응급조치 취소	즉시 긴급응급조치 취소
조치기간	임시조치 결정시까지	최장 1개월 (잠정조치 결정시 효력 상실)	최장 1개월 (잠정조치 결정시 효력 상실)
불이행시 제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임시조치(가정폭력) · 잠정조치(스토킹·제정안)>			
요 건	· <u>가정폭력범죄</u> 재발 우려 (검사청구 시) ·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 결정 시)	· <u>스토킹범죄</u> 재발 우려 (검사청구 시) ·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원 결정 시)	· <u>교제폭력범죄</u> 재발 우려 (검사청구 시) ·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원 결정 시)

구 분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제정안
청구권자	검사	검사	검사
조치내용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4호 및 6호는 법원의 결정으로만 가능	1. 피해자에 대한 스톱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 피해자에 대한 교제폭력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5. 관련 상담소등의 상담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조치기간	1호~3호: 기본 2개월 최장 6개월 4호~6호: 기본 1개월 최장 2개월	2호·3호·3호의2 - 기본 3개월, 최장 9개월 4호: 1개월	2호·3호·4호 - 기본 3개월, 최장 9개월 5호·6호·7호: 1개월
불이행시 제재	1호~3호 불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구류	2호·3호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단, 전자장치효용훼손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호·3호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단, 전자장치효용훼손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둘째, 안 제6조는 사법경찰관에게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4호는 “교제폭력행위자”를 “교제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공범”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하므로 “범죄 예방” 목적의 긴급응급조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 셋째, 안 제12조제1항제4호는 잠정조치의 하나로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규정하면서 안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법 제5장의2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법을 연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경찰청은 안 제5조제1호에 대하여, 교제폭력범죄가 아닌 교제폭력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지속적·반복적 요소와 관계 없이 “교제폭력범죄”를 행할 경우 처벌경고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고,

○ 안 제6조 및 제10조에 대하여, 일시 동거 등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 교제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유형에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 안 제7조 및 제10조에 대하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경찰 - 검찰 - 법원 3단계로 되어 있어 신속을 요하는 피해자보호조치에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긴급응급조치 사후 청구 및 잠정조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여 검사 경유 없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항고·재항고(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안 제15조는 검사, 교제폭력행위자 등에게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조는 항고의 기각 결정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15조(항고) ① 검사, 교제폭력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제 정 안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항고장의 제출) ① 제15조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7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항고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404조¹⁶⁾에 따라 항고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제 폭력범죄와 관련된 각종 절차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제정안과 같이 항고 사유와 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6) 「형사소송법」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유사입법례로서 제정안과 유사한 피해자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처벌법¹⁷⁾」, 「스토킹처벌법¹⁸⁾」에서도 피해자보호조치의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4)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안 제20조)

- 안 제20조는 검찰총장과 경찰관서의 장에게 각각 교제폭력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제 정 안
제20조(교제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교제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제폭력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제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제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교제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제폭력범죄를 전담하여 조사하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안 제20조는 교제폭력범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검사 또는

17) 제49조(항고), 제50조(항고장의 제출), 제51조(항고의 재판), 제52조(재항고), 제53조(집행의 부정지), 제54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18) 제12조(항고), 제13조(항고장의 제출), 제14조(항고의 재판), 제15조(재항고), 제16조(집행의 부정지)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 조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보임.

- 다만, 전담조사를 위해서는 수사 인력의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는바, 검찰과 경찰의 인력 현황 등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담조사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유사입법례로서 「스토킹처벌법¹⁹⁾」, 「성폭력처벌법²⁰⁾」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하고 있음.

5)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안 제21조)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또는 교제폭력범죄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
- 19)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톱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톱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톱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톱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톱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톱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톱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를 전담하여 조사하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 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임.

○ 제정안에서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 221)의 내용을 살펴보면,

- 검사·경찰서장은 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로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의 보호·신변 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이 있음.

21)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 정 안
제21조(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또는 교제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 등”은 “피해자 또는 교제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 현행법상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경찰청 훈령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²²⁾」에 따라 특정시설에서의 보호·신변경호, 외출·귀가 시 동행,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의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고, “교제폭력범죄 신고자”의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강간 살인·치사죄 등 동법상 “특정범죄²³⁾”에 해당하는 일부 범죄에 대한 신고자여야 함.

22) 제28조(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대상)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조치유형)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외출·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신변경호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비상연락망 구축
6.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 안 제21조는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내부지침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신변안전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공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 유사입법례로서 「스토킹처벌법²⁴⁾」의 경우 안 제21조와 동일하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만을 준용하고 있고,

○ 「성폭력처벌법²⁵⁾」은 이외에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 촬영),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를 함께 준용하고 있음.

○ 한편, 「가정폭력처벌법²⁶⁾」은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규정에서 법원이

24)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톱킹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톱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25)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26)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 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6)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안 제22조 및 제39조 제1항제2호·제3호)

□ 교제폭력 관련 업무에 담당하는자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구체적으로 교제폭력에 관한 각종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또는 사생활의 비밀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에 실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함.

제 정 안
제22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 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변경에 관한 업무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기간연장·변경에 관한 업무
4. 교제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②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 안 제22조는 교제폭력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등이 공개·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 유사입법례로서 「스토킹처벌법²⁷⁾」, 「성폭력처벌법²⁸⁾」에서도 피해자의

27)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
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변경에 관한 업무
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기간연장·변경에 관한 업무
4. 스톱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해당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7)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23조)

- 교제폭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해 피해자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 28)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제 정 안

-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 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피해자변호인제도를 도입할 경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 제23조는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 유사입법례로서 「스토킹처벌법²⁹⁾」, 「성폭력처벌법³⁰⁾」에서도 피해자

-
- 29)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30)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

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라. 피해자보호명령제도(안 제3장)

1) 피해자보호명령 등(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6조(피해자보호명령의 관할) 피해자보호명령의 관할은 교제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7조(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교제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 정 안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제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사건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³¹⁾로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도입하고 있는바, 이를 교제폭력범죄에 대해서도 도입할지 여부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 강화 측면과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을 통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신청·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잠정조치와는 별개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최장 3년까지 추가로 접근금지를 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보다 효과가 있을 것임.

□ 다만, 현재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처벌법」과

31) 2023. 2. 23. 2019헌바43

「아동학대처벌법」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생활영역을 공유하는 자들의 관계회복을 위해 마련된 법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전제하는 제정안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 피해자보호명령 사건과 스토킹범죄 형사사건이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 중복 조사로 인하여 수사나 재판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가정폭력처벌법³²⁾」과 「아동학대처벌법³³⁾」은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다른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원행정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또는 아동폭력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관계라는 법적인 관계로 인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여 도입한 제도인데 “교제관계”의 경우는 공동생활을 전제

32)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33)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하고 있지 않고 교제관계에 있다는 점만으로 어떠한 법률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신청할 경우 법원이 이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심리가 필요함에 따라 피해자보호조치가 오히려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경찰청은 안 제27조제5항(피해자 신변안전조치 규정)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피해자 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변안전조치 주체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마.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안 제4장)

1) 배상명령 등(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 법원이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게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0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교제폭력범죄를 심리하는 제1심 법원에 제31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배상명령) ① 법원은 제1심의 교제폭력범죄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제 정 안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교제폭력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② 법원 교제폭력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32조(배상명령의 선고) ① 배상명령은 잠정조치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잠정조치 결정서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⑤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잠정조치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33조(신청의 각하) ①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② 잠정조치의 결정과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잠정조치 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제34조(불복) ①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사건과 함께 항고심에 이심(移審)된다. 잠정조치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 정 안

③ 교제폭력행위자는 잠정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재항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는 배상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35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잠정조치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현행법 체계상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의 복잡함과 소송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³⁴⁾」에서는 형사배상명령

34)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준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형사범죄 피해자의 경우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 법원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형법」상 상해죄·강간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음.

○ 한편, 「가정폭력처벌법³⁵⁾」에서도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결정할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 ⑧ (생략)

35) 제5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배상명령) ①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부가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부양료나 치료비 등 금전의 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폭력범죄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배상명령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취지로 이해됨.

○ 따라서 형사배상명령이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이루어지는 반면, 「가정폭력처벌법」상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음.

○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상 배상명령은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배상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부양료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가정폭력사건의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가정구성원의 부양을 게을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제정안은 교제폭력범죄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원이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부양료 또는 치료비 등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잠정조치 및 배상명령제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안 제12조에 따른 잠정조치는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어 피해자에

대한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보호조치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등과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원의 결정이며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도 할 수 있음.

○ 따라서 형사공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절차를 통해 법원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배상명령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잠정조치 결정 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치사상죄, 상해죄, 강간죄 등은 이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배상명령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법 체계적 측면에서 안 제31조는 법원의 배상명령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면서 “법원이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제정안은 보호처분 선고와 가정구성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조문을 살펴보면 잠정조치 결정 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바. 벌칙(안 제5장)

1) 교제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안 제37조)

□ 안 제37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심신장애인³⁶⁾ 또는 청각·언어장애인³⁷⁾에 대한 처벌 면제·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의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임.

제 정 안
제37조(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조제3호가목, 라목, 사목 및 파목의 교제폭력범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제312조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 적용 배제

□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심신상실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심신미약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11조는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는

36)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7)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책임무능력자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므로 형을 면제하고, 한정책임능력자의 경우 책임능력상태에서 같은 행위를 행한 때에 비하여 책임이 작을 수 있으므로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하게 한 것임. 다만 동법 제3항에 따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따라서 현행 「형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우 위험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으면 형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는바, 이로 인해 술에 너그러운 문화가 조성되어 음주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등의 폐해가 있으며, 흉악범죄의 경우에도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책임이 감면되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안 제37조제1항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형벌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판례³⁸⁾와 다수설³⁹⁾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의 의미를 “위험의 발생을 현실적으로 예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 등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해석이나 실무의 보완 등을 통하여 책임원칙에 맞는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유사입법례로서 「성폭력처벌법⁴⁰⁾」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음행매개죄·음화제조 및 반포죄 등을 제외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 적용을 임의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원행정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⁴¹⁾에서 이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규정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8)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 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39) “제10조제3항의 ‘위험을 발생을 예견하고’는 위험의발생을 예견한 경우 뿐 아니라 예견가능하였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통설)”(박상기·전지연, 형법학[총론·각론 강의](제4판), 2018, 164쪽)

40)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 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1)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배제

□ 현행 「형법」상 폭행죄⁴²⁾, 협박죄⁴³⁾, 명예훼손죄⁴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공포심 유발 정보의 유통금지위반죄⁴⁵⁾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 안 제37조제2항은 교제폭력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폭행죄 등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배제함으로써 당사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42)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43)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44)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언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5)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배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① 사안이 매우 우발적이고 경미하여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서 따라 진정으로 처벌불원을 원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폭행, 협박 등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점과 ②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 밖에 없고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합의 요구 과정 등에서 보복범죄로의 확산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 참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는데, 동 규정이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줄 것을 종용하는 등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2023. 7. 11.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바 있음.

□ 법원행정처는 ①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 또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한 과잉범죄화의 우려 ② 교제폭력행위자 처벌의 필요성 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한 2차 가해 우려 사이에서의 비교형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경찰청은 교제폭력이 반복되며 강력범죄로 악화되는 사례들을 고려할 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 신설에 공감하나 일시적 다툼·갈등 등 경미사안과 형사입건화, 피해자 의사존중 필요성 등 사유로 유지하자는 입장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안 제38조 및 제39조제4항)

□ 안 제38조는 교제폭력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교제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제 정 안
제3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제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② 법원은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제폭력의 진단·상담

제 정 안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집행한다.

1.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2.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3.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 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형벌에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9조(벌칙) ④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 제38조는 교제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교제폭력범죄자에게 재범방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스토킹처벌법⁴⁶⁾」 등 다수의 법률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교제폭력의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교제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다만, 안 제39조제4항은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면서 “제37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수명령 병과에 대한 근거는 “안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안 제39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

- 안 제39조는 잠정조치의 하나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임.

46)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②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정 안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 3. (생략)

②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생략)

④ (생략)

□ 피해자보호조치의 일환인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불이행과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 제39조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형사제재의 종류와 벌칙 상한과 관련하여서는 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및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유사입법례인 「스토킹처벌법⁴⁷⁾」에서도 잠정조치 및 긴급

47)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조치 불이행 등에 대하여 제정안과 동일한 벌칙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70

2 ~ 3. (생 략)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